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2014. 1. 29. 제정

2019. 8. 2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인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정년계열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교 다른 규정과의 관계) 비정년계열교원인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외국어강의중심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26.)

제3조(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계약) ① 비정년계열교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임용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하는 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7.10.23.)
2. 급여: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5.6.22.)

③ (삭제 2015.6.22.)

제4조(비정년계열교원의 자격기준) ① 비정년계열교원의 직급별 자격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연구·교육경력을 최저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2017.10.23)

1. 조교수: 박사학위 취득
2. 부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9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본교의 조교수 임용 후 9년
3. 삭제 (2017.10.23.)
4. 삭제 (2017.10.23.)

②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의 경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1항제2호 이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비정년계열교원의 직급별 연차) ①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직급별 세부 연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22., 2015.10.26., 2017.10.23)

②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의 직급별 세부 연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22., 2017.10.23.)

제6조(비정년계열교원의 구분 변경) ① 재직 중 비정년계열교원 내에서 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재임용 심의 신청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구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에서 외국어강의중심교원으로의 변경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5.10.26.)

② 비정년계열교원의 구분 변경은 소속 기관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7조(비정년계열교원의 재임용)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및 재임용 계약조건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사는 별표 3의 서식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5.10.26., 2017.10.23.)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제8조(비정년계열교원의 승진임용) ① 비정년계열교원(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에 해당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제4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평균 교원종합평가점수 및 연구영역에서의 연평균 실적평가점수(이하 “최저 연구실적점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교원은 1년 차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재직(평가)기간에 비례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21.)

1. 강의중심교원: 교원종합평가점수 150점, 최저 연구실적점수 100점

2. 연구중심교원: 교원종합평가점수 200점, 최저 연구실적점수 150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임상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제4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평균 교원종합평가점수가 200점 이상, 최저 연구실적점수가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21.)

③ 교원이 교원종합평가점수 또는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제6항 및 제7항이 정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비된 점수(연구실적 의무편수 포함) 외에 승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연구중심교원은 교원종합평가점수 연간 100

점, 강의중심교원은 교원종합평가점수 연간 75점을 취득하여야 승진임용될 수 있다.

④ 부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교원종합평가점수 및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4.7.3.)

⑥ 연구중심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척상의 연구실적 편수 기준(이하 “연구실적 의무편수”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⑦ 강의중심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한 연구실적 의무편수는 제6항에 따라 정한 편수의 3분의 2로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⑨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는 당해 대학(원) 소속 교원의 최근 연구실적, 승진율 등을 참작하여 당해 대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⑩ 연구실적점수는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를 100% 충족하는 경우를 150점 만점으로 하여 동일한 비율로 환산한다.

⑪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26.)

제9조(강의) ① 비정년계열교원의 강의담당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2017.10.23)

1. 강의중심교원: 매학기 주당 9학점 이상 또는 12시간 이상

2. 연구중심교원: 매학기 주당 6학점 이상

3. 외국어강의중심교원: 매학기 주당 12시간 이상

②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은 임용 기간 동안 연평균 교원종합평가점수 100점, 최저 연구실적점수 50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하는 경우 다음 재임용 기간 동안 제1항에서 정하는 강의담당시간 이외에 추가로 연간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담당시간이 부과될 수 있다.

③ 제2항의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계산 방법은 제8조제9항 및 제10항을 따른다.

④ 외국어강의중심 교원은 학기 중 주당 4시간 이상의 학생 개별지도 및 상담시간을 가져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강의담당시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26.)

부칙(2014. 1. 29. 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의 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 중 7월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실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외국어 교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4. 7. 3.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 5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5. 6. 22.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4항은 2016년 5월 교원종합평가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0. 2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3.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제1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7년 11월 1일 현재 본교 비정년계열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아래 직급 획정표에 따라 직급을 새로 획정한다.

직급 획정표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구	신
조교수B[1]	조교수[1]
조교수B[2]	조교수[2]
조교수B[3]	조교수[3]
조교수B[4]	조교수[4]
조교수A[1]	조교수[5]
조교수A[2]	조교수[6]
조교수A[3]	조교수[7]
조교수A[4]	조교수[8]
조교수A[5]	조교수[9]
부교수B[1]	부교수[1]
부교수B[2]	부교수[2]
부교수B[3]	부교수[3]

부교수A[1]	부교수[4]
부교수A[2]	부교수[5]
부교수A[3]	부교수[6]
부교수A[4]	부교수[7]

직급 확정표

(외국어강의중심교원)

구	신
조교수B[1]	조교수[1]
조교수B[2]	조교수[2]
조교수B[3]	조교수[3]
조교수B[4]	조교수[4]
조교수B[5]	조교수[5]
조교수B[6]	조교수[6]
조교수B[7]	조교수[7]
조교수A[1]	조교수[8]
조교수A[2]	조교수[9]
조교수A[3]	조교수[10]
조교수A[4]	조교수[11]
조교수A[5]	조교수[12]
조교수A[6]	조교수[13]
조교수A[7]	조교수[14]

부칙(2018. 11. 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신규 임용된 교원의 최저 연구실적점수에 관한 부분은 2018년 3월 1일에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8. 2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6.22., 2017.10.23.) [제목개정 2015.10.26.]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직급별 세부 연차
(제5조제1항관련)

직급	세부 연차
<u>부교수</u>	<u>부교수7</u>
	<u>부교수6</u>
	<u>부교수5</u>
	<u>부교수4</u>
	<u>부교수3</u>
	<u>부교수2</u>
	<u>부교수1</u>
<u>조교수</u>	<u>조교수9</u>
	<u>조교수8</u>
	<u>조교수7</u>
	<u>조교수6</u>
	<u>조교수5</u>
	<u>조교수4</u>
	<u>조교수3</u>
	<u>조교수2</u>
	<u>조교수1</u>

[별표 2] (개정 2015.6.22., 2017.10.23.)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의 세부 연차(제5조제2항 관련)

직급	세부 연차
<u>조교수</u>	<u>조교수14</u>
	<u>조교수13</u>
	<u>조교수12</u>
	<u>조교수11</u>
	<u>조교수10</u>
	<u>조교수9</u>
	<u>조교수8</u>
	<u>조교수7</u>
	<u>조교수6</u>
	<u>조교수5</u>
	<u>조교수4</u>
	<u>조교수3</u>
	<u>조교수2</u>
	<u>조교수1</u>

[별표 3] (개정 2015.6.22., 2017.10.23.)

재임용 심사 평정표(강의중심교원) (제7조제4항 관련)
※ 해당 배점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전공(학과)		평가위원		(인)		
직위:		성명:		평가일시		년 월 일		
	평정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수	
		상	중상	중	중하	하		
1.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20점)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10점) (언행, 상벌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수로서의 자질을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언행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 등 공식석상에서 교육자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복무태도(10점) (교원인사 규정, 학사행정 준수 상황,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복무태도를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사행정에 협조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사 행정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2.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25점)	가. 연구능력(5점) (임용기간 동안 연구유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지원 실적, 연구비 수혜 실적 등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능력을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연구유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수혜실적이 있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 또는 연구비 지원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한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연구실적(15점) (임용기간 동안 발간된 연구실적 등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실적을 평정)	(15점)	(12점)	(9점)	(6점)	(3점)		
	임용기간 동안 평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가 기준점수(100점)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가 기준점수(100점)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다. 국내·외 학술활동(5점) (임용기간 동안 국내외 학술발표 등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술활동을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 중 학술대회발표 점수가 평균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외 학술발표 실적이 없거나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 중 학술대회발표 점수가 평균 10점 미만인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3.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40점)	가. 교수능력 및 열의(15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시수, 영어강의,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수능력 및 열의를 평정)	(15점)	(12점)	(9점)	(6점)	(3점)		임용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교원종합평가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 미만인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수업이행 상태(10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에서 강의기법, 강의 내용, 책임강의시수 충족 등 교육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업이행 상태를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다. 교육효과(학생반응 등)(15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효과를 평정)	(15점)	(12점)	(9점)	(6점)	(3점)		
	임용기간 동안 강의평가결과가 소속대학(원)과 소속학과(전공)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치에 미달하는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4.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15점)	가. 학생지도(5점) (임용기간 동안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도교수로서 활동한 실적 등 학생지도실적을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 요청한 학생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 활동을 이행한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 활동 실적(비율이나 횟수)이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학교발전에의 기여(10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의 봉사활동 참여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 참여 요청한 행사 및 회의 참여 등)에 참여한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점 수 합 계 점								
※ 평가위원 의견(점수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기재)								

재임용 심사 종합평정표(강의중심교원)

전공(학과):

직위:

성명:

평가위원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기준배점)											비고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20점)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25점)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40점)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15점)		점수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10점)	복무 태도 (10점)	연구 능력 (5점)	연구 실적 (15점)	국 내 · 외 학술활동 (5점)	교수능력 및 열의 (15점)	수업이행 상태 (10점)	교육효과 (학생반응 등) (15점)	학생 지도 (5점)	학교발전에의 기여 (10점)			
평균 점수													
추천	추천												
여부	미추천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의견 :													

<작성요령>

1. 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의 성명 및 평가 점수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균 점수 산출한 후 평균점수의 합을 점수 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추천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평균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대학(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재임용 심사 평정표(연구중심교원)

※ 해당 배점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전공(학과)		평가위원		(인)		
직위:	성명:	평가일시		년	월	일
	평정항목 (세부기준)	배점				
		상	중상	중	중하	하
1.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20점)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10점) (언행, 상벌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수로서의 자질을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언행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 등 공식석상에서 교육자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복무태도(10점) (교원인사 규정, 학사행정 준수 상황,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복무태도를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사행정에 협조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사 행정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2.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50점)	가. 연구능력(15점) (임용기간 동안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지원 실적, 연구비 수혜 실적 등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능력을 평정)	(15점)	(12점)	(9점)	(6점)	(3점)
		임용기간 동안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수혜실적이 있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 또는 연구비 지원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한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연구실적(25점) (임용기간 동안 발간된 연구실적물 등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실적을 평정)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임용기간 동안 평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가 기준점수(150점)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가 기준점수(150점)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3.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20점)	가. 교수능력 및 열의(5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시수, 영어강의,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수능력 및 열의를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교원종합평가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 미만인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수업이행 상태(5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에서 강의기법, 강의 내용, 책임강의시수 충족 등 교육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업이행 상태를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4.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10점)	다. 교육효과(학생반응 등)(10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효과를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강의평가결과가 소속대학(원)과 소속학과(전공)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치에 미달하는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가. 학생지도(5점) (임용기간 동안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도교수로서 활동한 실적 등 학생지도실적을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 요청한 학생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 활동을 이행한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 활동 실적(비율이나 횟수)이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학교발전에의 기여(5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의 봉사활동 참여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 참여 요청한 행사 및 회의 참여 등)에 참여한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점 수 합 계						점
※ 평가위원 의견(점수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기재)						

재임용 심사 종합평정표(연구중심교원)

전공(학과):

직위:

성명:

평가위원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기준배점)										비고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20점)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50점)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20점)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10점)			점수계
	교수로서의 인격과 품위 (10점)	복무 태도 (10점)	연구 능력 (15점)	연구 실적 (25점)	국 내 · 외 학술활동 (10점)	교수능력 및 열의 (5점)	수업이행 상태 (5점)	교육효과 (학생반응 등) (10점)	학생 지도 (5점)	학술발표 기여 (5점)		
평균 점수												
추천 여부	추천											
	미추천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의견 :												

<작성요령>

1. 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의 성명 및 평가 점수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균 점수 산출한 후 평균점수의 합을 점수 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추천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평균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대학(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재임용 심사 평정표(산학협력중점교원)

※ 해당 배점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전공(학과)	평가위원		(인)		
직위:	성명:		평가일시	년 월 일			
	평정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수
		상	중상	중	중하	하	
1.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20점)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10점) (언행, 상벌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수로서의 자질을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언행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 등 공식석상에서 교육자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복무태도(10점) (교원인사 규정, 학사행정 준수 상황,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복무태도를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사행정에 협조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사 행정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2. 연구· 산학협력 능력과 실적(50점)	가. 연구·산학협력능력(25점) (임용기간 동안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지원 실적, 연구비 수혜 실적 등 연구·산학협력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산학협력능력을 평정)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임용기간 동안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수혜실적이 있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지원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한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연구·산학협력실적(25점) (임용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를 기초로 하여 연구·산학협력실적을 평정)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임용기간 동안 평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가 기준점수(150점)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가 기준점수(150점)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3.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20점)	가. 교수능력 및 열의(5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시수, 영어강의,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수능력 및 열의를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교원종합평가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 미만인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수업이행 상태(5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에서 강의기법, 강의 내용, 책임강의시수 충족 등 교육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업이행 상태를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다. 교육효과(학생반응 등)(10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효과를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강의평가결과가 소속대학(원)과 소속학과(전공)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치에 미달하는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4.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10점)	가. 학생지도(5점) (임용기간 동안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도교수로서 활동한 실적 등 학생지도실적을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 요청한 학생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 활동을 이행한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 활동 실적(비율이나 횟수)이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학교발전에의 기여(5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의 봉사활동 참여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 참여 요청한 행사 및 회의 참여 등)에 참여한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점 수 합 계					점
※ 평가위원 의견(점수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기재)							

재임용 심사 종합평정표(산학협력중점교원)

전공(학과):

직위:

성명:

평가위원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기준배점)										비고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20점)		연구·산학협력능력과 실적(50점)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20점)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10점)		점수계	
	교육자 로서의 인격과 품위 (10점)	복무 태도 (10점)	연구· 산학협력 능력 (25점)	연구· 산학협력 실적 (25점)	교수능력 및 열의 (5점)	수업 이행상태 (5점)	교육효과 (학생 반응 등) (10점)	학생 지도 (5점)	학교발전 에의 기여 (5점)		
평균 점수											
추천 여부	추천										
	미추천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의견 :											

<작성요령>

1. 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의 성명 및 평가 점수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균 점수 산출한 후 평균점수의 합을 점수 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추천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평균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대학(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재임용 심사 평정표(외국어강의중심교원)

※ 해당 배점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전공(학과)		평가위원		(인)		
직위:		성명:		평가일시		년 월 일		
	평 정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점수	
		상	중상	중	중하	하		
1.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20점)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10점) (언행, 상벌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수로서의 자질을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언행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 등 공식석상에서 교육자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복무태도(10점) (교원인사 규정, 학사행정 준수 상황,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복무태도를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본교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사행정에 협조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사 행정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2.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15점)	가. 연구능력(5점) (임용기간 동안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지원 실적, 연구비 수혜 실적 등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능력을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수혜실적이 있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 또는 연구비 지원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한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연구실적(5점) (임용기간 동안 발간된 연구실적물 등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실적을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평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가 기준점수(50점)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가 기준점수(50점)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다. 국내·외 학술활동(5점) (임용기간 동안 국내외 학술발표 등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술활동을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 중 학술대회발표 점수가 평균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외 학술발표 실적이 없거나 교원종합평가 연구실적점수 중 학술대회발표 점수가 평균 10점 미만인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3.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50점)	가. 교수능력 및 열의(15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시수, 영어강의,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수능력 및 열의를 평정)	(15점)	(12점)	(9점)	(6점)	(3점)		
		임용기간 동안 교원종합평가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교원종합평가 교육실적점수가 평균 10점 미만인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수업이행 상태(10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에서 강의기법, 강의 내용, 책임강의시수 충족 등 교육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업이행 상태를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다. 교육효과(학생반응 등)(25점)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효과를 평정)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임용기간 동안 강의평가결과가 소속대학(원)과 소속학과(전공)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치에 미달하는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4.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15점)	가. 학생지도(5점) (임용기간 동안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도교수로서 활동한 실적 등 학생지도실적을 평정)	(5점)	(4점)	(3점)	(2점)	(1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 요청한 학생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 활동을 이행한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 활동 실적(비율이나 횟수)이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학교발전에의 기여(10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의 봉사활동 참여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정)	(10점)	(8점)	(6점)	(4점)	(2점)		
		임용기간 동안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 참여 요청한 행사 및 회의 참여 등)에 참여한 경우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대학(학과/전공) 또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하(中下)’ 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점 수 합 계								점
※ 평가위원 의견(점수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기재)								

재임용 심사 종합평정표(외국어강의중심교원)

전공(학과) :

직위:

성명:

평가위원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기준배점)										점수계	비고
	교수로서의 기본자질(20점)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15점)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50점)			교수로서의 봉사실적(15점)			
	교수로서의 인격과 품위 (10점)	복무 태도 (10점)	연구 능력 (5점)	연구 실적 (5점)	국 내 · 외 학술활동 (5점)	교수능력 및 열의 (15점)	수업이행 상태 (10점)	교육효과 (학생평등등) (25점)	학생 지도 (5점)	학교발전 기여 (10점)		
평균 점수												
추천	추천											
여부	미추천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의견 :												

<작성요령>

1. 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의 성명 및 평가 점수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균 점수 산출한 후 평균점수의 합을 점수 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추천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평균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대학(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별표 4] (삭제 2015.6.22.)